

서울대학교외국대학과의학생교류수학및학점인정에관한규정

제정 1997. 5. 31 규칙 제1052호
개정 2002. 1. 7 규칙 제1221호
2003. 7. 28 규칙 제1400호
2009. 8. 7 규칙 제1737호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와 외국대학과의 학생 교류수학 및 학점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02. 1. 7>

제 2 조 (적용범위) 이 규정은 본교와 외국대학과의 상호 교환, 유학 등 교류 수학하는 학생에게 적용한다.

제 3 조 (시행세칙)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 2 장 본교 학생의 외국대학 수학

제 4 조 (지원대학) 지원대학은 본교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지도교수의 추천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이외의 외국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.

제 5 조 (지원자격) 본교 재학생으로서 외국대학에 수학 하고자 하는 학생(이하“지원자”라 한다)은 학칙에 의거 징계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서 기 이수한 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학사과정은 2.7 이상, 대학원과정은 3.3 이상인 자로 한다.

제 6 조 (수학신청) ①지원자는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지원서류를 소속학과(부)장을 경유하여 대학(원)장에게 제출한다.

1. 수학신청원 (별지 1호 서식)

2. 지도교수 추천서

3.-4.<삭제> 2002. 1. 7

②정규학기 수학은 수학 희망학기 3개월 전에, 계절학기 수학은 개강 2개월 전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<개정 2002. 1. 7>

제 7 조 (수학허가) 수학은 소속대학(원)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허가한다.

제 8 조 (등록 및 학기의 인정) ①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대학 중 학생교환협약에 따라 상호 수강료를 면제하기로 한 외국대학에 수학을 허가받은 학생은 수학기간 동안 본교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입하고 등록하여야 하며, 그 외의 대학에 수학하는 경우는 당해 외국대학의 규정에 따른다.

②휴학기간 중에 외국대학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 학점은 인정할 수 있되, 등록학기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 9 조 (교과목의 이수) 이수 교과목은 전공관련 교과목을 원칙으로 하되, 지도교수의 추천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이외의 교과목도 이수하게 할 수 있다.

제 10 조 (수학신청의 취소) ①수학신청의 취소를 원하는 학생은 수업주수 4분의 1선 이내에 별지 2호 서식의 수학신청 취소원을 본교에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②수학신청 취소 절차는 이 규정 제6조 제1항 및 제7조를 준용한다.

③계절수업 수학 취소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 11 조 (취득학점) ①학기당 취득학점은 학사과정은 18학점, 대학원과정은 과정별로 12학점, 계절학기는 9학점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.<개정 2002. 1. 7, 2009. 8. 7.>

②수학기간 동안 취득학점은 계절학기 학점을 포함하여 소속대학(원)의 학위취득에 필요한 최저 소요학점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.<개정 2002. 1. 7>

제 12 조 (수학기간) 정규학기의 수학기간은 학사과정은 4개학기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은 2개학기 이내로 하며, 석.박사통합과정은 4개학기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 다만, 계절학기의 수학기간은 제한하지 아니한다.<개정 2002. 1. 7>

제 13 조 (학점의 인정 기준) ①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취득한 성적 그대로 학적부에 등재하되, 평점평균 산출시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. 다만,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공동학위를 수여하는 대학에서 수학한 경우에는 학점 및 평점을 인정한다.<개정 2003. 7. 28>

②이미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의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.<개정 2003. 7. 28>

③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예정 교과목과 전공관련 교과목 이외의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14조가 정하는 학점인정 심의절차를 거쳐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.<개정 2003. 7. 28>

제 14 조 (학점인정 절차) ①수학이 허가된 자는 수학기간 종료 후 즉시 성적증명서와 이수기록 등 관련서류를 지도교수와 소속대학 학과(부)장을 경유하여 대학(원)장에게 제출한다.

②대학(원)장은 소속대학(원)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학점인정을 신청한다.

③총장은 전항의 신청내용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취득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적부에 “○○대학(교) 수학 이수학점”임을 표시하여 등재한다.

제 3 장 외국대학 학생의 본교 수학

제 15 조 (지원자격) 본교에 수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외국대학에 재적 중인 자로서 해당 학위과정을 1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 한다.

제 16 조 (지원시기) 정규학기 수학은 수학 희망학기 3개월 전에, 계절학기 수학은 개강 2개월 전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<개정 2002. 1. 7>

제 17 조 (수학허가) 지원자는 소정의 지원서류를 제출하고 서류심사와 구술고사 및 면접 등 심사절차를 거쳐 총장의 수학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계절수업만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심사절차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 18 조 (정원) 정규학기 수학 학생의 정원은 당해 학과(부)정원의 10분의 1 이내로 하며, 계절수업 수학정원은 따로 정한다.

제 19 조 (등록 및 수강료) ①정규학기 수학학생은 수학기간 동안 본교에 소정의 수강료를 납입하고 등록하여야 한다. 다만, 본교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중 학생교환 협약에 따라 상호 수강료를 면제하기로 한 경우에는 수강료는 납입하지 아니하나 소정의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.

②수강료는 본교 재학생의 당해학기 납입금을 기준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책정한다.

1. 수 업 료 = 수업료 × 수강학점수 ÷ 수강신청기준학점수

(학사과정 : 17학점, 대학원과정 : 12학점)

2. 기성회비 = 기성회비 × 수강학점수 ÷ 수강신청기준학점수

(학사과정 : 17학점, 대학원과정 : 12학점)

③수학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사용료, 실험실습비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④계절수업 수학학생은 본교에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제 20 조 (수강신청) 수강신청, 변경 및 취소는 본교가 정한 절차에 따른다.

제 21 조 (수학허가의 취소) 수학허가를 받은 학생이 수학기간 중 본교의 학칙을 위반한 때에는 수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제 22 조 (취득학점) 학기당 취득학점과 수학기간 동안 취득학점 및 수학기간은 소속대학의 기준에 따른다.<개정 2002. 1. 7>

①-②<삭제> 2002. 1. 7

제 23 조 <삭제> 2002. 1. 7

제 24 조 (취득학점의 처리) ①취득학점은 본교의 학칙 및 학업성적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.

②전항의 취득학점에 대하여 성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.

제 25 조 (수강증의 발급) 수학이 허가된 학생에게는 별지 3호 서식의 수강증을 발급할 수 있다.

제 26 조 (시설물의 이용) 수학 학생에게는 도서관, 실험실습실, 기숙사 등의 시설물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.

부 칙 (제1052호)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폐지규정)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외국대학과의학점상호인정에관한규정은 폐지한다.

③(경과규정) 이 규정 시행 당시 서울대학교특별생수학에관한규정 및 외국대학과의학점상호인정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수학이 허가된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수학이 허가된 자로 본다.

부 칙 (제1221호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제1400호)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성적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부 칙 (제1737호, 2009.8.7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1호 서식]

수 학 신 청 원

소 속	() 대학 () 학과(부) () 학년				
성 명 (한 자)			주민등록 번호	-	
			학 번		
수 학 대 학 교	() 대학교 () 대학				
수 학 구 분	정규학기 () 계절학기 ()				
수 학 기 간	년 월 일 ~ 년 월 일				
수강예정 교 과 목	교 과 목 명		학 점	비 고	
지 금 까 지 타 대 학 수 학 내 역	학교명		수 학 기 간	~	취 득 학 점 수
	학교명		수 학 기 간	~	취 득 학 점 수
	학교명		수 학 기 간	~	취 득 학 점 수
기 이수한 학기의 성적 평점평균			담당자	(인)	

위와 같이 수학신청원을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신청인 : (인)

지 도 교 수	학과(부)장

서 울 대 학 교 총 장 귀 하

[별지 2호 서식]

수 학 신 청 취 소 원

소 속	대학 학과(부) 학년		
성 명		주민등록번호	
		학 번	
수학대학교	대학교	대학	학과(부) 학년
수학구분	정 규 학 기, 계 절 수 업		
취소사유			

위와 같이 수학신청취소원을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년 월 일

신 청 인 : (인)

지 도 교 수	학과(부)장

서 울 대 학 교 총 장 귀 하

[별지 3호 서식]

- 규격 8.5cm×5.5cm
- 스노우지 300g

<앞면>

교 류 수 학 생 수 강 증	
성 명	사진 2.5cm×3.5cm
주민등록번호	
소 속 대 학	
	00대학(원) 00과정 00학과(부)
수 강 기 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	

<뒷면>

1. 이 수강증은 타인에게 대여하지 못합니다.		
2. 이 증은 수강기간까지 유효합니다.		
3. 이 증은 수강기간 종료 후 반드시 반납하여야 합니다.		
년 월 일		
서울대학교 0 0 대학(원) 장 직인		